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를 사용자 귀책 사유에 대칭적으로 신설하고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 이용방법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를 증대하며, 궁도장 이용료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궁도장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정의 개정(안 제2조)
-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신설(안 제12조)
- 체육시설 중 국궁장 명칭 변경(안 별표 1)
- 궁도장 전용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체육시설 이용시간, 휴무일 등 이용방법 명시 및 궁도장 이용료 신설(안 별표 3)
- 불명확한 사용료 감경요율 규정 개정 및 감경대상 신설(안 별표 7)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요율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생략)	제2조(정의)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이 <u>란</u> <u>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u> ----. 13.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2조는 청소년 정의의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청소년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관내 체육센터 이용 및 감면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 ----- ----- -----.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생략) 나. <u>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u>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을 반환 다. <u>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u>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반환 라.·마. (생략)	1. ----- ----- <u>취소</u> <u>할 경우 사용료를</u> ----- ----- 가. (현행과 같음) 나. <u>대관신청</u> ----- ----- ----- ----- 다. <u>대관신청</u> ----- ----- ----- ----- ----- 라.·마.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u>인정되어</u> 일시 중단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단된 일수만큼	2. ----- ----- <u>인정되어 대관이 취소되거나</u> ----- <u>나</u> -----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중단일수
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신 설>

<신 설>

<신 설>

3. 4. (생 략)

② (생 략)

----- 사용료
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
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나.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
우 :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
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
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
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
의 10을 배상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한정하였던 체육시설 대관을 삭제하여 다양한 행사를 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호는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신설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비율을 사용자 귀책 경우와 대칭적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 제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별표1] 체육시설의 범위(체육시설 중 국궁장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1. 전문체육시설			1. 전문체육시설		
명 칭	위 치	기 능	명 칭	위 치	기 능
박정희체육관	(생 략)	(생 략)	박정희체육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복합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금오테니스장			금오테니스장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국궁장 (금오정)	구미시 3공단1로 219	국궁	궁도장 (금오정)	(현행과 같음)	궁도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생 략)	(생 략)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선산체육관			선산체육관		

- 개정안 별표1은 국궁의 명칭을 궁도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궁도협회, 전국궁도대회 등 더욱 널리쓰이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임.

궁도 (弓道)	활을 쏘는 무술
국궁 (國弓)	우리나라의 활. 또는 그 활을 쏘는 기술.

○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궁도장 전용사용료 신설)

현행					개정안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박정희체육관	주경기장	(생략)				박정희체육관	주경기장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트랙필드						트랙필드								
	행사트랙필드						행사트랙필드								
시민운동장주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시민운동장주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투포환장						투포환장								
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	농구장					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다목적경기장								
복합체육시설	실외(1면 기준)					금오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금오테니스장	실내(1면 기준)						실내(1면 기준)								
	구포동생활체육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구포동생활체육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주간조기						주간조기									
야간조기						야간조기									
야간						야간									
고아시니어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생략)				고아시니어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현행과 같음)							
선산체육관	다목적구장					선산체육관	다목적구장								
〈신설〉						궁도장(금오정)	대관료(1관 4시간)	20,000원	30,000원						
(생략)						(현행과 같음)									

- 개정안 별표2는 궁도장 전용사용료 신설을 위한 것으로, 궁도장 전용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와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시간, 휴무일 등 이용방법 명시 및 궁도장 이용료 신설)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구분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금오 테니스장	실외	주간 초기·야간	(생략)			〈신설〉	금오 테니스장	실외	주간 초기·야간	(현행과 같음)		○ 이용방법 - 1면, 1회, 1시간 기준 - 초기 (06:00~09:00)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 휴무일 - 신청·설·추석 연휴 - 근로자의 날 ○ 초기·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실내	주간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소프트)	실내	주간				
소프트장	실내	초기·야간					테니스장	실내	초기·야간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일반	일반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일반					
	청소년		〈신설〉		〈신설〉		청소년		○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 기준 - 운영시간 (10:00~23: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청·설·추석 연휴 - 근로자의 날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어린이						어린이						
	대화료 (1회)						대화료 (1회)						
	락커 (1개월)						락커 (1개월)						
〈신설〉						〈신설〉	궁도장 (금오정)	일반 (1일)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 이용방법 - 1일 3시간 기준 - 하절기 (09:00~21:00) 동절기 (09:00~20:00)
								청소년 (1일)	2,400원	3,200원	2,400원	3,200원	
								일반 (1개월)	30,000원	45,000원	30,000원	45,000원	
								청소년 (1개월)	24,000원	36,000원	24,000원	36,000원	
(생략)						(현행과 같음)						〈삭제〉	
○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경우에는, [별표 7]의 면제 또는 100분의 50의 감면요율을 적용한다.													

- 개정안 별표3은 체육시설 이용방법 및 궁도장 이용료 신설을 위한 것으로, 금오테니스장,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소프트볼) 테니스장,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이용방법과 휴무일 및 궁도장(금오정)의 이용료와 이용방법을 규정함.

○ [별표 7]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불명확한 사용료 감면
요율 규정 개정 및 감면대상 신설)

현행			개정안		
구분	대 상	감면요율	구분	대 상	감면요율
면제	(생 략)	100분의 100	면제	(현행과 같음)	100분의 100
감경	(생 략)	100분의 80		(현행과 같음)	100분의 80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및 지정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생 략)	100분의 50	감경	(현행과 같음)	100분의 50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6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구미시 방역문화여유및자원에관한조례」에 따른 여의대상자	
	<신 설>			「노년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유대자 (65세 이상인 사람)	
○ 감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발급 3개월 미만) 제출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100분의 80 감면요율은 전용사용료에, 100분의 50 감면요율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적용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시 대표선수 훈련)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사용료는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요율을 적용한다.		

- 개정안 별표7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정비를 위한 것으로, 금오테니스장,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소프트볼) 테니스장, 복합스포츠센터(볼링장)의 이용방법과 휴무일 및 궁도장(금오정)의 이용료와 이용방법을 규정함.